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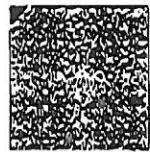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출·수입, 제조, 사용, 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등 모든 취급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처에서는 취급자에게 충분한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제공하고자 계도기간을 '19.6.3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상의 취급보고 오류 등을 확인·조치하고, 취급보고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처에서는 '18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 중 "사망신고자 명의 조제·투약보고"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한 바, 다수의 취급보고 건이 보고자의 보고 오류로 확인되어 최근 관할 시·도에 해당 취급자에 대한 행정계도를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귀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 및 비회원 마약류취급자께 마약류 취급보고 시 환자정보(환자명 및 주민등록번호), 취급일자 등 보고 항목을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주무관 주민진 사무관 박공수 미약관리과장 신경 2019. 1. 31.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1153 (2019. 1. 31.) 접수

구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redjoo79@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농지입니다.